

창원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단112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헌 담당변호사 추형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최학세, 강민창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6. 9. 21. D의 아버지 망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978호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주)E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주)F이 (주)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F이 자신에게 약 58억 원을 대여했던 C에게 2015. 3. 13. 유일한 재산인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질권설정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C을 상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약 30억 원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8. 6.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F과 C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3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나1224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C이 2019. 6. 7. 사망하여, 그 법정상속인 중 아들 D만이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D가 망 C의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도 2020. 1. 23. “망 C과 (주)F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약 3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D가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 설정

원고와 C 사이의 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 22.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등기를 경로해주었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및 변제

그 후 C이 2019. 6. 7. 사망하여, D가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D는 2019.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G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G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망 C 사망 당시 재산

D가 망 C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망 C의 재산목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24,000,000원, ② 금전채권 합계 72,486,923원, ③ 자동차 시가 8,500,000원.

소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순위 근저당권자 H은행 근저당채무 418,125,513원, ② 이 사건 부동산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채무 250,000,000원, ③ 양도소득세(포항세무서) 144,852,080원, ④ 재산세(포항세무서) 16,898,760원, ⑤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한 채무 3,066,350,68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망 C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1. 22.에는 원고의 망 C 내지 이를 상속한 D에 대한 가액배상반환 채권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F이 2015. 3. 13. 망 C에게 질권설정해

준 행위에 대해 원고가 2016. 9. 21. 망 C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가액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28.에는 1심에서 이미 망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30억 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망 C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결국 2020. 1. 23. 위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망 C의 수계인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30억 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다시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망 C, 이를 상속한 D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망 C 내지 D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채무자가 그 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의 사망으로 아들 D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재산목록을 보면,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금전채권 7,000만 원 상당, 자동차 800만 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채무 합계 약 6억 7,000만 원, 세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채무 3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보면 C이 당시 채무 초과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C, 수계인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내용을 보면, C이 (주)F에 대한 약 5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받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C이 위 5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30억 원 가액배상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가적으로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망 C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그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 항변한다.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6. 5. 망 C, D로부터, “피고가 C에게 2억 원을 대여일 2018. 6. 12., 변제일 2018. 9. 11., 이자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가 상환이 안 될 경우 추가 담보 제공한다. D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8. 6. 12. D 계좌에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3) 변제기가 지나도록 망 C이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는 위 약정 내용대로 추가담보로서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2.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D는 2019.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합10799호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1. 10. 28.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시세가 당시 6억 6,000만 원으로 매도가액 6억 5,0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G이 매매대금을 D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부동산 압류가 집행된 체납 세금을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G의 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5.자 포항세무서, 2017. 11. 7.자 포항시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5. 3. 23. (주)H의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H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세무서 등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부동산에 표시된 채무액을 훨씬 상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C에게 돈을 대여해준 후 약정대로 변제기 이후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던 점, 원고의 채권은 (주)F이 자신에 대한 58억 원 대여금 채권자였던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가액배상으로서 C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반환받는 내용인데, 이를 제3자인 피고로서는 전혀 알기 어려운 것일뿐더러, 원고의 30억 원 채권을 제외하면, 당시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